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32호

「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9일

상주시의회 의장



「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찰·방제 체계를 구축하고,
- 나.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·돌발 및 검역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농작물 병해충예찰·방제단 설치에 근거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예찰 방제단의 구성, 임무를 규정함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농작물 병해충예찰·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예산지원,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3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koym9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1)에
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